

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1년 7월 30일

회 사 명 :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
(영문명) Hana Asset Trust Co.,Ltd  
(홈페이지) <http://www.hanatrust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  
(전 화) 02-3287-4600

대 표 이 사 : 이 창 희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지원본부장  
(성 명) 최용길 (전 화) 02-3287-4674

작 성 자 : (직 책) 경영지원팀장  
(성 명) 명석민 (전 화) 02-3287-4613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시공사 또는 위탁자의 부도발생

1. 부도발생기관	(주)경일종합건설
2. 최종부도(당좌거래정지)일자	2021.05.25.(2021.05.24.)
3. 확인일자	2021.05.25.(2021.05.24.)
4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도내용 : 어음부도</li> <li>- 부도금액 : 800백만원</li> <li>- 부도발생은행 : 기업은행</li> <li>- 부도사유 : 하도급 공사대금 등</li> </ul>

### 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1항6호에 따른 신탁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4호다목에 따라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된 것을 확인한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부도발생기관”은 해당 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한 시공사 또는 위탁자를 기재한다.
- 주3) 상기사항 외의 부도내용(어음부도·수표부도), 부도금액, 부도발생은행, 부도사유 및 경위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확인한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
(제6-8-2호)

시공사 또는 위탁자의 은행거래 정지.금지

1. 거래 정지.금지 해당 기관명	(주)경일종합건설
2. 거래 정지.금지 일자	2021.05.24.
3. 확인일자	2021.05.24.
4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 거래정지금지은행 : 기업은행 - 거래정지금지사유 :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등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1항6호에 따른 신탁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4호다목에 따라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것을 확인한 때 공시한다. 다만,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어 은행거래가 정지.금지된 경우에는 당해서식에 따라 공시한다.
- 주2) “거래 정지.금지 해당 기관명”은 은행거래가 정지.금지된 해당 시공사 또는 위탁자를 기재한다.
- 주3) 상기사항 외의 거래정지·금지 은행, 거래정지·금지 사유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확인한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